



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시설물”을 “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”을 “「도로표지규칙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하천법에 의한 하천(육천, 청계천 포함)”을 “「하천법」에 의한 하천(육천 포함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도로법”을 “「도로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교통안전시설”이라 함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로부속시설물”을 “도로부속물”로 한다.

- 1. 교통국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지, 교통안전시설, 교통안전부속물(시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, 갈매기표지, 도로반사경 등),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 등

제6조제1항 중 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”을 “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5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교통안전시설의 관리)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교통안전·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이 장에서 “유지관리계획”이라 한다)”을 “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유지관리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 제2조 내지 제13조”를 “「도로표지규칙」 제2조부터 제13조까지”로 한다.

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란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(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란 중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【별표】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시설물 유지관리 내역	관 리 자
도 로 시 설 물	서울특별시도	○ 차도부분 건설안전본부장
	자동차전용도로	○ 청소 및 보도부분(측구 포함) 자 치 구 청 장
	자동차전용도로	○ 도로시설물(차도·보도 포함) - 지하보도·보도육교 제외 ○ 청소 및 녹지·가로수 건설안전본부장
	교 량	○ 한강상 교량 및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 건설안전본부장
	터 널	○ 서울특별시도상의 터널 건설안전본부장
	고 가 차 도	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고가차도 건설안전본부장
	입 체 교 차	○ 입체교차 건설안전본부장
물 지 하 차 도	○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차도 및 지하보차도 건설안전본부장	
도 로 부 속 물	공 동 구	○ 공동구 건설안전본부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○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자 치 구 청 장
	가로등 및 기전시설물	○ 자동차전용도로·한강상교량·고가차도· 입체교차상의 가로등 ○ 터널·지하차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건설안전본부장
		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(보도육교 포함) ○ 지하보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자 치 구 청 장
	기타 도로부속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차량 진입금지시설·과속방지시설· 미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·질개지·뱀면 도로 옹벽·방음벽·맨홀 등)	○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·터널· 고가차도·입체교차·지하차도 등의 기타 도로부 속물의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본부장
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○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건설안전본부장 (총괄 교통국장)		
교 통 안 전 · 관 리 시 설 물	지능형교통체계	○ 교통정보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연락시설의 설치·관리 교 통 국 장
	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	○ 버스전용차로 유·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·관리 교 통 국 장
	도 로 표 지	○ 문안검토 ○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·고가차도 ○ 입체교차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교 통 국 장 건설안전본부 장
		○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
	교통안전시설 (신호기, 안전표지)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○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○ 신호기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상 의 안전표지의 설치 건설안전본부장
		○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
	교통안전부속물 (시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, 도로반사경 등)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교 통 국 장 건설안전본부 장

구 분	시 설 물 유 지 관 리 내 역	관 리 자
하 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, 지방1·2급 하천 (단,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이 유지관리)</li> <li>○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</li> </ul>	자 치 구 청 장
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빗물펌프장 (유수지 포함)</li> <li>○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</li> <li>○ 호안브릭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실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</li> </ul>	자 치 구 청 장
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조물, 문짝, 권양기 시설물 등</li> </ul>	자 치 구 청 장
설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</li> <li>○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</li> </ul>	한강사업본부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</li> <li>○ 기타하천 육갑문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</li> </ul>	자 치 구 청 장
하 수 도 시 설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처리종말시설 및 부대시설</li> </ul>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하 수 도 시 설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</li> </ul>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하 수 도 시 설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</li> </ul>	자 치 구 청 장
복 개 구 조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복개구조물 (단, 육천의 서소문로 경계 ~한강 합류지점 구간은 건설안전본부장이 유지관리)</li> </ul>	주기능별 접용기관(부서) 외 장
<p>- 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은 건설기획국장이 관리한다.</p> <p>가. 청계천 제외지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 수문</p> <p>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부분을 말한다)천변측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와 가로수·녹지대</p>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</b></p>	<p><b>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</b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<b>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</b>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b>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</b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대상) 다음 <b>각호의 시설물</b>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--- <b>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</b>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"도로표지"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<b>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</b> 제2조에 규정된 경계·이정·방향·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.</p> <p>5. ~ 8. (생 략)</p> <p>9. "하천복개구조물"이라 함은 <b>하천</b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b>「도로표지규칙」</b> ----- 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b>「하천</b>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<p><u>법에 의한 하천(옥천, 청계천 포함)</u>을 복개하여 도로, 주차장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(기초, 기둥, 상판, 벽체 등)을 말한다.</p>	<p><u>법」에 의한 하천(옥천 포함)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10. 11. (생략) 12. “도로부속물”이라 함은 <u>도로법</u>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</p>	<p>10. 11. (현행과 같음) 12. ----- 「<u>도로법</u>」 ----- -----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13. “<u>교통안전시설</u>”이라 함은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<u>신호기 및 안전표지</u>를 말한다.</p>
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시장은 교통국장과 건설기획국장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.</p>	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----- -----<u>각호</u> ----- -----</p>
<p>1. <u>교통국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지,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(시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, 갈매기표지, 도로반사경 등) 등</u></p>	<p>1. <u>교통국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지, 교통안전시설, 교통안전부속물(시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, 갈매기표지, 도로반사경 등),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 등</u></p>
<p>2. <u>건설기획국장 : 도로시설물,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수도시설물, 하천 및 하천시설물,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등</u></p>	<p>2. ----- -----<u>도로부속물</u> 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</p>	<p>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</p>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"특별법"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4조(위험시설물의 지정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장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

<신설>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험시설물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
시행규칙」 제7조-----

제4장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

제26조의2(교통안전시설의 관리) ①

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


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